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교육 목차 -

1 자원순환기본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2 폐기물처분부담금 개요

3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4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5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6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7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



자원순환기본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대량생산 · 소비 · 폐기의 사회경제구조의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로 작용

국내 상황

자원 해외 의존도 높음

- 에너지 97%, 광물자원 90%
- 하루 1조원(연 371조원) 수입

재활용가능자원 매립, 소각

-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의 56% 자원회수 가능

자원순환기본법 제정(2016.5)

- 처분부담금, 성과관리, 순환자원 등 도입

해외 상황

전 세계적 자원 위기

- GDP 1% 증가할 때 자원사용 0.4%상승
-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 치열

자원순환 관련 법적 기반 마련

- 독일(1996년), 일본(2001년)

OECD, EU 국가 매립 제로화 추진

- 폐기물 직매립 금지, 매립세/소각세 부과

자원순환기본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정책비전 : 자원순환사회

생산 · 유통 · 소비 · 폐기 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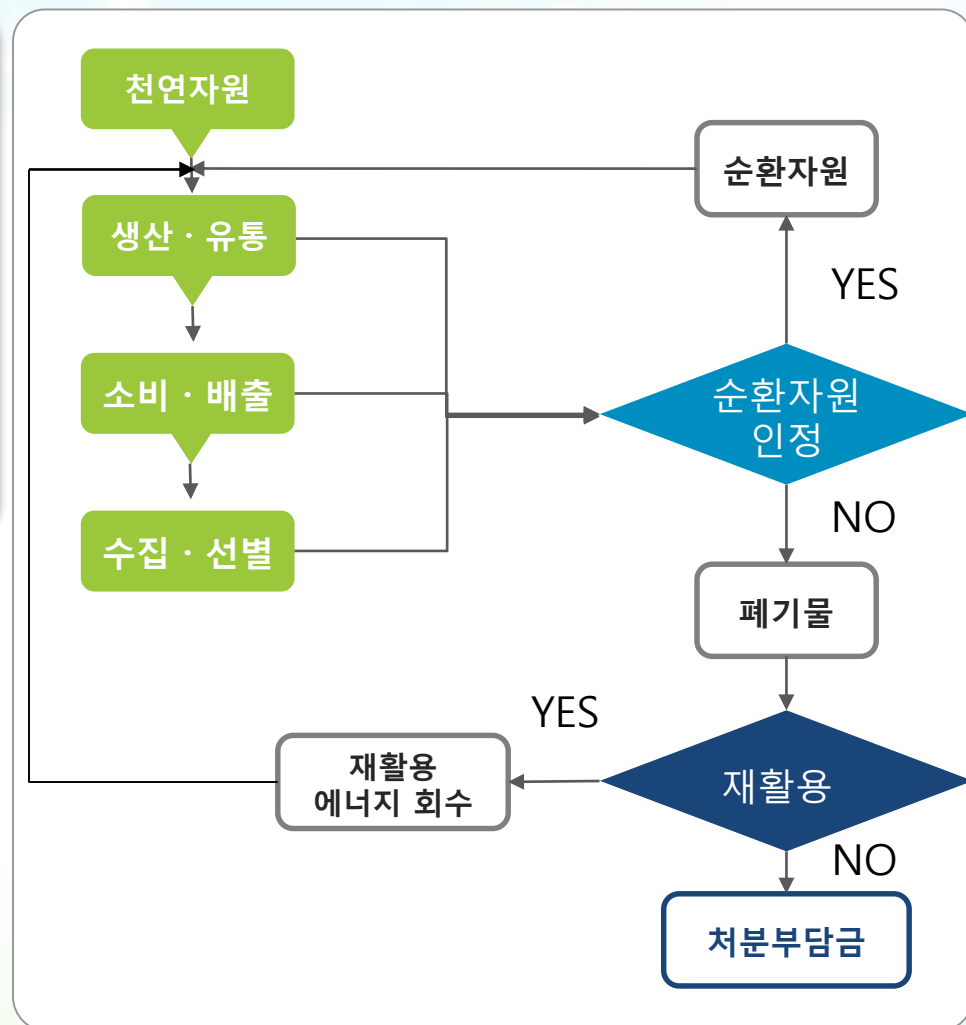
- 자원은 효율적으로 투입
- 발생 폐기물은 순환이용 촉진

순환자원 투입 최대화

⇒ 천연자원 투입 최소화

지속가능한 사회

“법제화 추진”



자원순환기본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내용

자원순환 기반 구축

기본원칙, 주체별 책무

국가,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국가 자원순환 목표 설정, 자원 절약과 폐기물 발생억제,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등

자원순환사회 문화 조성, 자원순환 국제협력 등

자원순환 촉진 수단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자체, 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설정 및 관리

폐기물처분소각매립부담금

소각·매립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되도록 유도

제품등 순환이용성 평가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제품생산 시 개선토록 권고

자원순환 업계 지원

순환자원 인정

환경성·경제성 등 충족 시 폐기물 종료(폐기물 규제에서 배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자원순환산업 육성, 기술개발, 영세자원순환시설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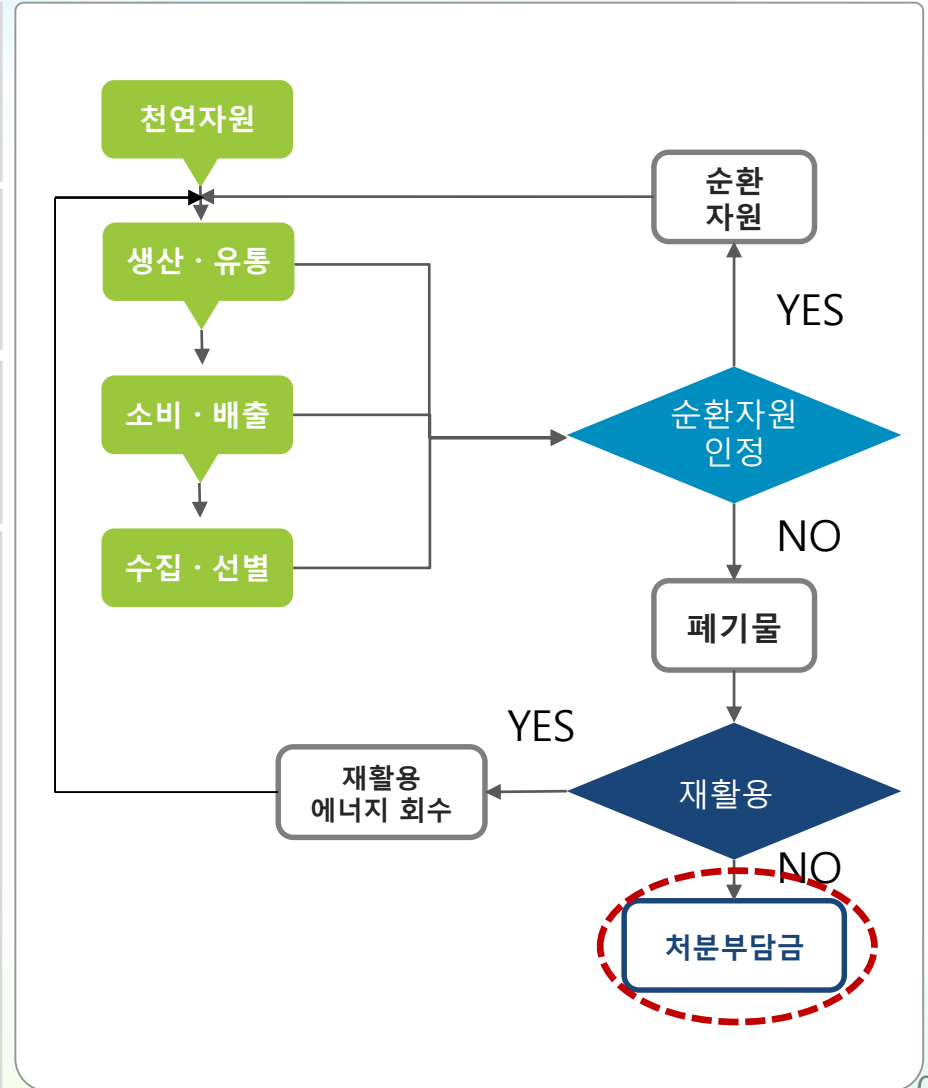
순환자원정보센터 설치,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등

매립 제로화, 재활용 극대화 실현

폐기물처분부담금 개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소각·매립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선택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
- 부과·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의 정부재정사업에 사용(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
 - 폐기물순환자원 이용 장려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변 환경개선 사업
 - 폐기물 발생억제 등 시설 설치·운영 사업
 -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단지 조정·운영 사업
 - 영세 자원순환시설의 환경·시설 개선 사업
 -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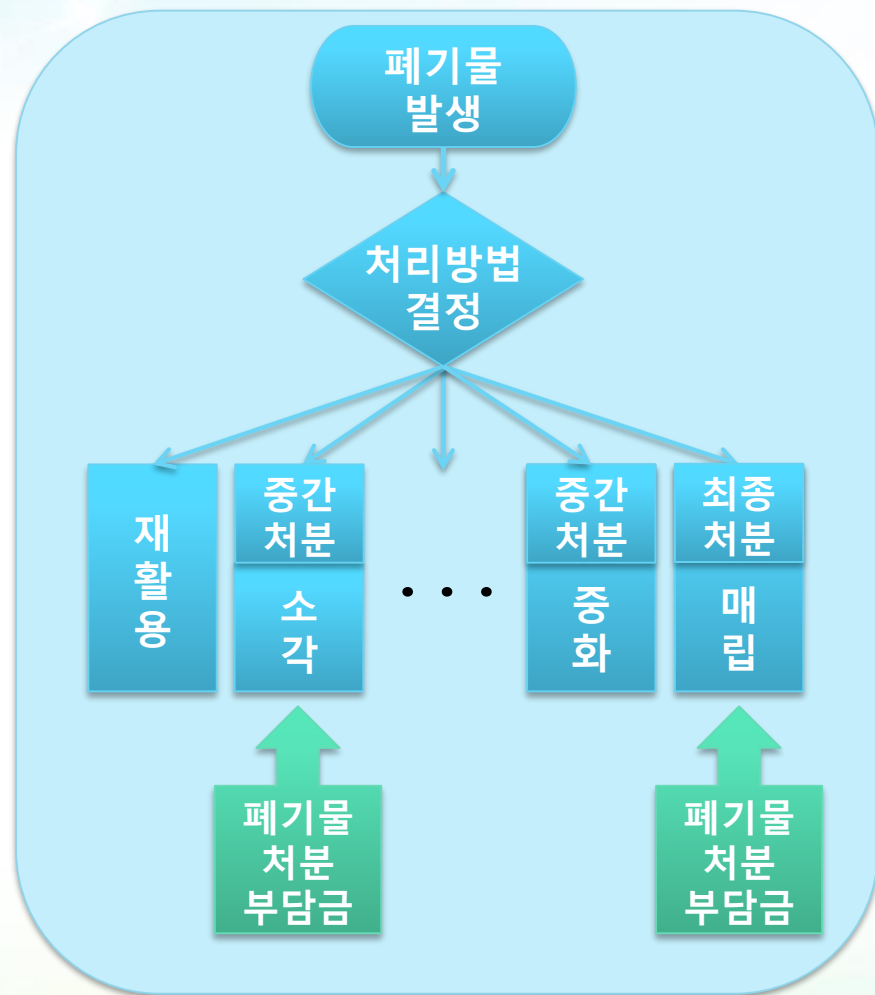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부과대상 정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은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할 때 부과
-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

소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처분
매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처분

- 폐기물을 재활용만 하는 등 **소각·매립이 아닌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
- 폐기물의 처리방법 구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1. 중간처분 시설	가. 소각시설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압축시설, 파쇄·분쇄 시설, 절단시설, 용융시설, 증발·농축 시설, 정제시설, 유수 분리시설, 탈수·건조 시설, 멸균분쇄 시설
	다. 화학적 처분시설	고형화·고화·안정화 시설, 반응시설, 응집·침전 시설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소멸화 시설,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마. 기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최종처분 시설	가. 매립시설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 파쇄·분쇄·탈피시설, 절단시설, 용융·용해시설, 연료화시설,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 유수분리시설, 탈수·건조시설, 세척시설
	나. 화학적 재활용시설	고형화·고화시설, 반응시설, 응집·침전시설
	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kg이상인 시설(소멸화·사료화·퇴비화시설·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부숙토 생산시설),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버섯재배시설
	라. 시멘트소성로	
	마. 용해로	
	바. 소성·탄화시설	
	사. 골재가공시설	
	아. 의약품 제조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	
	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시행령 제18조 제4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번호: (1) 상 호(영점) (2) 상 명(대외자) (3)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4) 주 소사업장 또는 배출원명 (5) 전세번호

신고종류: (6) 주 용로 및 사용량(톤/년) (7) 주 생산동량 및 생산량(톤/년)

주 제조공장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구분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상장 상태	주 배출량(톤/년)	주 용량(톤/년)	주 용량(톤/년)	처리 방법	처리량(톤/년)

※ 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9x127mm(복합사) 89g/㎡(세로방향)

⑪ 운 반		⑫ 처 리			
운반자	운반량(톤/년)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톤/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PCBs)을 다음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
 -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6.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
7.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
8.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및 부과·징수기관

구분	납부의무자	부과·징수기관
생활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사업장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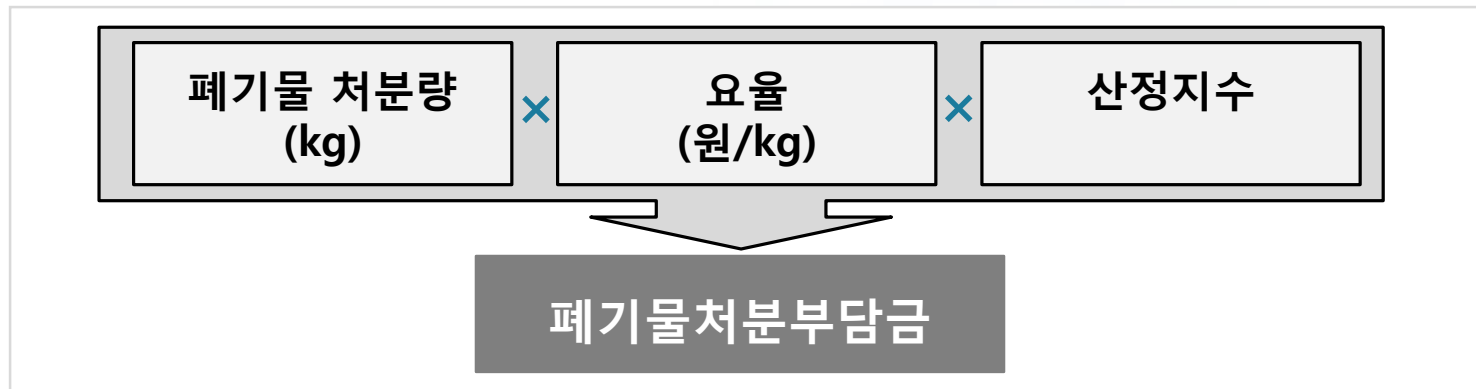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중간 생략)...에게 **위탁하여 처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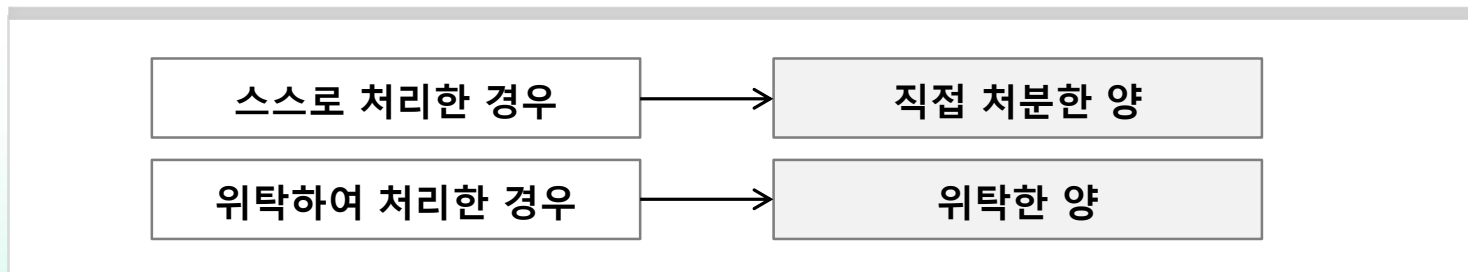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 시행령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 폐기물 처분량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한 양(중량단위(kg))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kg	10원/kg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25원/kg	10원/kg
	불연성	10원/kg	-
건설폐기물		30원/kg	10원/kg

| 시행령 제18조 [별표6]

● 폐기물 유형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다목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 사업장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가연성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성오니류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열경화수지에 한함) • 광재류 • 분진류 • 폐주물사 및 폐사 • 폐내화물 • 폐도자기조각 • 소각재 •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 폐촉매(금속성 폐촉매에 한함) • 폐흡착제 및 폐흡수재 (광물류로 제조된 경우에 한함) • 폐석고 및 폐석회 • 연소잔재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석재류 • 폐패각 • 폐토사류 • 폐콘크리트류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블록 • 폐기와 • 폐금속류 • 폐유리류 • 폐타일 • 폐전주 • 폐소화기류 • 폐전지류 • 폐흑연가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 ◆ 배출 단계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 포함)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간주
- ◆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 : 가연성폐기물 요율을 적용
-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 가연성폐기물 요율을 적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 산정지수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X 가격변동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

● 가격변동지수

-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참고> 폐기물부담금 가격변동지수

연 도	가격변동지수
2013	1.0235
2014	0.9975
2015	1.0045
2016	0.9860
2017	0.9910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사항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감면
- 2개 이상의 감면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감면기준 중 가장 높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

1

자가 매립 후
재활용

2

폐자원에너지
회수

3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4

중소기업

5

지정폐기물
처분

6

도서지역
폐기물 처분

7

재난폐기물
처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자가 매립 후 재활용

감면대상

-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 자가매립시설*에
- 폐기물(석탄재, 광재, 폐석고 등)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 3년 이내(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를 포함)에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감면율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 말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100%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 말일부터 이후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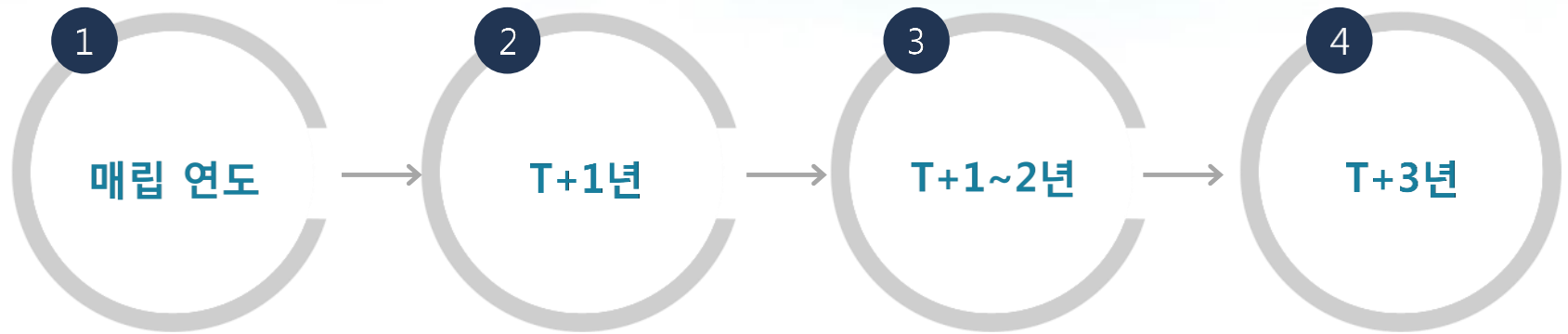
50%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자가매립 후 재활용 감면 시 부과징수 시기 및 금액

- 폐기물처분부담금을 2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부과 및 징수



- 매립연도 말일까지 재활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50%

- 매립 후 3년동안 재활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50%

부과징수 예시

	2018	2019	2020	2021
매립량(톤)	100			
재활용량(톤)	50	30	0	
매립잔량(톤)	50	20	20	
부과액(만원)		25		10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폐자원 에너지 회수

감면대상

- 폐기물을 소각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감 면 율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50%이상 60%미만	50%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60%이상 75%미만	60%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75%이상	75%

-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비율)
 -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되, 세부 산정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개별 소각시설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2기 이상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개별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가능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방법

- 에너지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발급 주체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기본법 관련조항

시행령 제17조 별표 5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예시 :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등)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예시 :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등)

소각시설 설치·운영자

검증팀

검·인증위원회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신청

검증

심의·인증

인증서

<별지 서식 7>

제 호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 상 호(명칭):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인 증 사 항

대상폐기물종류	
소각시설 설치위치	
에너지 회수 사용 유형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 년 월 일	
인증유효 년 월 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의해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받은 시설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폐기물 부담금 납부

감면대상

-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 · 재료 · 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감 면 율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100%
----------------	-------------

중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연간 매출액 120억 미만인
경우

- 연간 매출액 구간별 감면비율

10억원 미만	100%
10억원이상 120억원미만	50%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로 한정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확인 근거

법률 제14839호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 6. 30>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 :

주업종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

< 유의사항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기업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업에 한하여 표시)
- * 발급 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진흥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 *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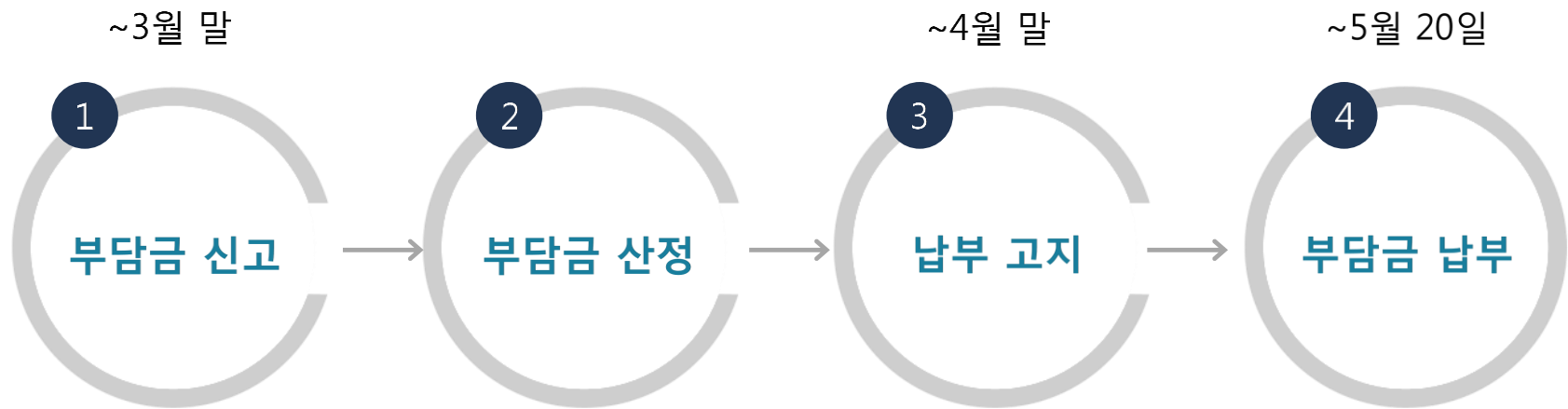
기타

감면대상	감 면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 	100%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정기부과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전년도에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까지 신고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해당자)
-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해당자)
- 부과·징수(연1회)
- 생활폐기물 : 시·도지사
- 사업장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 국고금 취급 금융기관
- 신용카드 납부 가능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내용

- 사업장 기본정보 및 담당자 정보
- 납부의무자 구분 및 감면대상 여부
- 소각 및 매립처분한 폐기물종류
- 폐기물종류별 처분방법 및 처분량

○ 첨부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신고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
-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스스로 처분하는 경우)
-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등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www.budan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상호(명칭)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대표자)		법인(주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담당자(작성자)		직위		전화번호	
납부의무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input type="checkbox"/>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감면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가 매립 후 재활용, <input type="checkbox"/> 소각열에너지회수, <input type="checkbox"/>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정폐기물처분, <input type="checkbox"/> 도서지역폐기물처분, <input type="checkbox"/> 재난폐기물처분			
연간 매출액		원	총폐기물 처분량	kg	

신고내용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폐기물 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	위탁				
폐기물 매립				[]	[]				
				[]	[]				
				[]	[]				
총신고금액(원)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폐기물 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	위탁				
폐기물 소각				[]	[]				
				[]	[]				
				[]	[]				
총신고금액(원)									

자가 매립 후 3년 이후 미재활용량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매립량(kg) (매립연도)	연도별 재활용량(kg)		3년 이후 미재활용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부과율	납부금액 (원)
			해당 연도	1년차					
								50%	
폐기물처분부담금 총신고금액(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

감면신청서 작성내용

- 사업장 기본정보
- 납부의무자 구분
- 감면대상 폐기물의 종류
- 폐기물종류별 처분방법
- 폐기물종류별 처분량 및 감면사유, 감면금액

첨부서류(예시)

- (소각열에너지회수의 경우)
 -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분한 양의 증명자료
 -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 (폐기물부담금 납부의 경우)
 -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
 - 납부대상의 소각 또는 매립량 증명자료
-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연간 매출액 증명자료
- (지정폐기물의 경우)
 -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www.budan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 _____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성명(대표자) : _____ 법인(주인·외국인)등록번호 : _____ 주소(사업장) : _____ (전화번호: _____)								
납부의무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input type="checkbox"/>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청내용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처분방법		폐기물처분량 (kg)	폐기물 처분부담금 (원)	감면사유 (1-6)	감면율 (%)	감면금액 (원)
		매립	소각					
		[]	[]					
		[]	[]					
		[]	[]					
총감면금액								
연 매출액				원	폐기물 총처분량		kg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분할납부 기한은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

1회분

5월 20일 까지

2회분

10월 20일 까지

- 분할납부 신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 시 분할납부신청서와 함께 제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www.budan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분할납부 신청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금액(원)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기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비고
	제1기	5월 20일		
	제2기	10월 20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한국환경공단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관: 시·도 또는 한국환경공단) → 검토 → 결재 → 분할납부 고지 (신청인)

210mm×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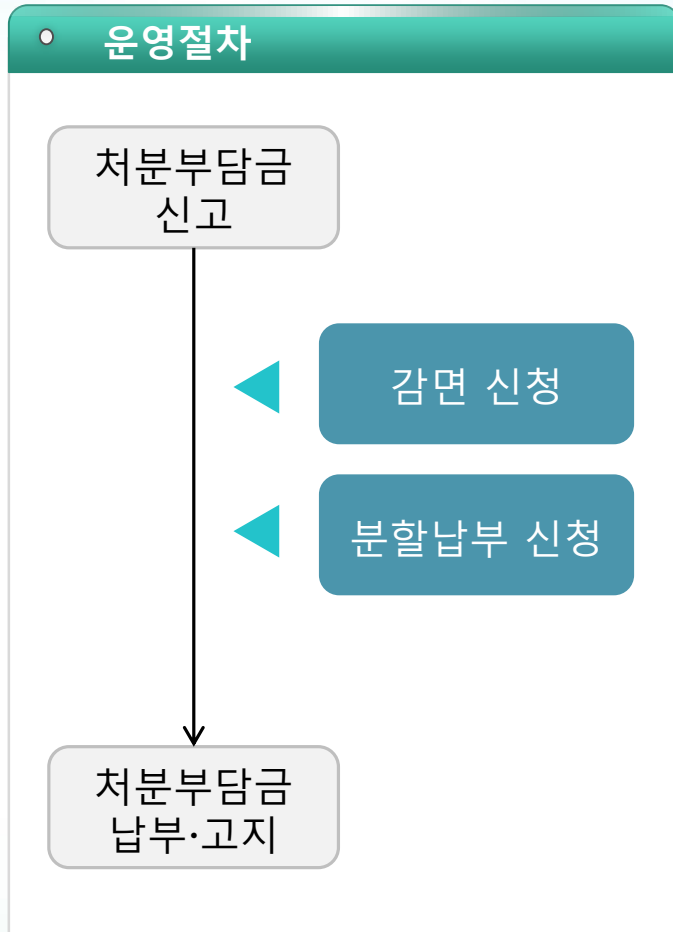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시 확인사항(징수기관)

• 징수기관(시/도, 공단) 확인 사항

- 징수기관은 부담금 신고 및 감면 신청 시 제출된 첨부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 처리방법의 적정성
 - 자가 또는 위탁처리하는 처분시설의 적정성
 - 적용 요율 등 부담금 산출기준 및 감면기준 적용의 적합성
 - 기타 제출된 시험분석자료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 등
-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다음 자료를 통해 검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증명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 정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
 - 그 밖에 처분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제 1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성명)	주소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원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 2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성명)	주소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은행 우체국 (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 3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영수확인 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성명)	주소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세관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수납인)
 우체국 (인)
 170mm×105mm(전산용지)

(제 4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서(한국은행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성명)	주소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납기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원
				원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수납인)
 우체국 (인)
 170mm×105mm(전산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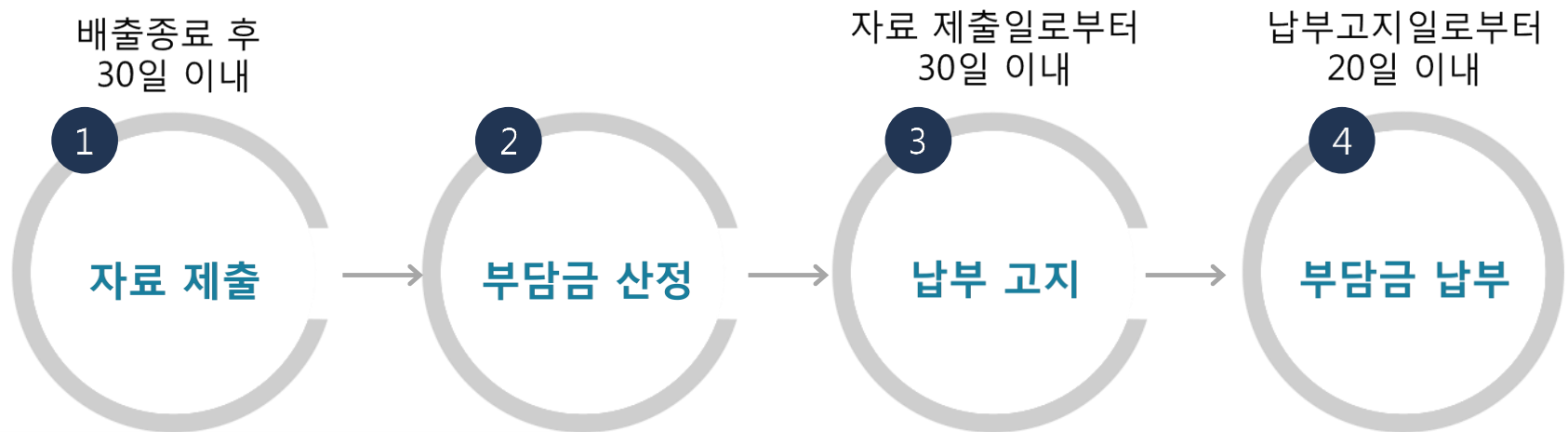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수시부과

1. 건설공사 등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해당연도 내에 배출을 종료
2. 폐기물처분량 실적 조사·확인에 따른 부과

● 연도 중 폐기물 배출 종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른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가 해당연도 중 폐기물 배출을 종료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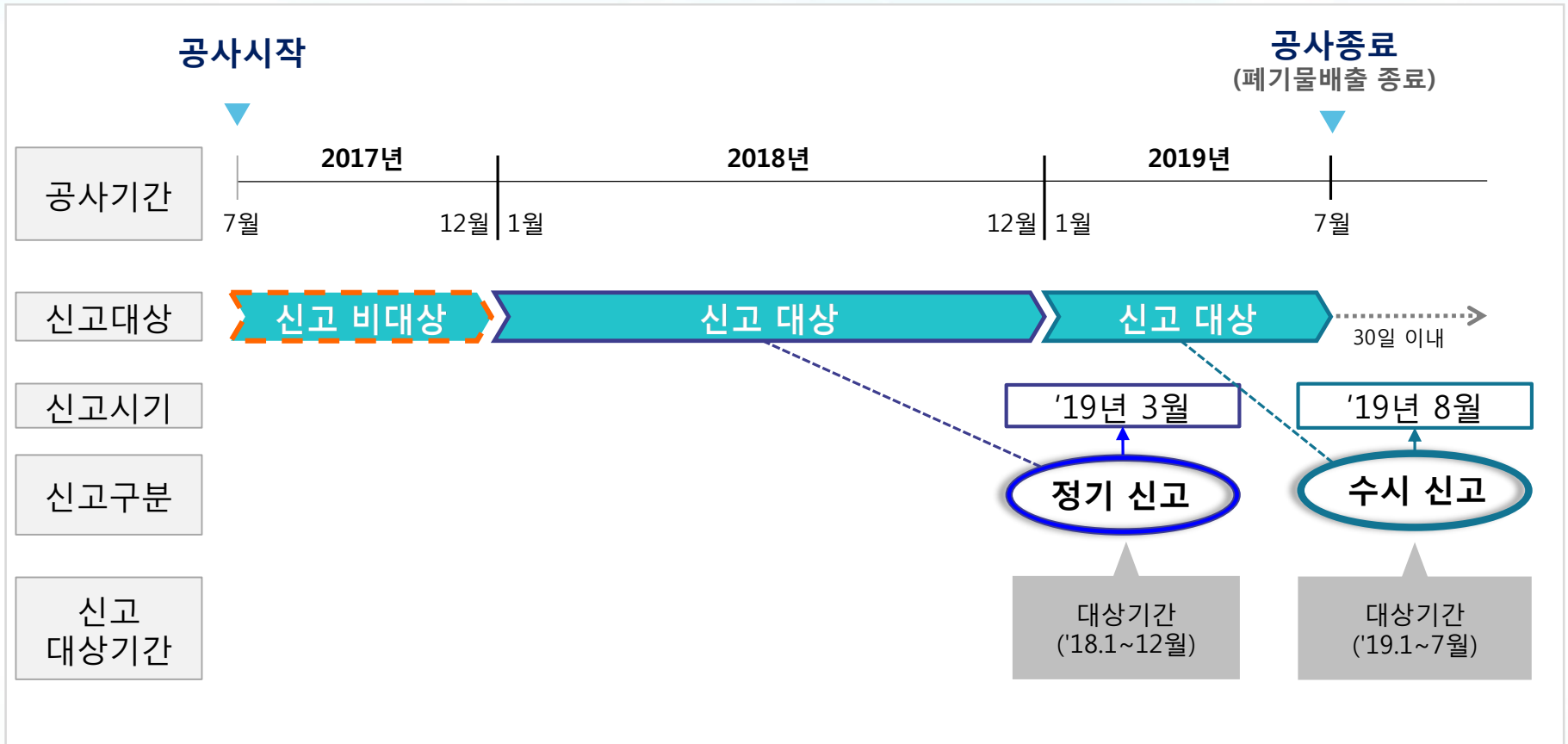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감면은 다음연도 3월 신청하여 해당 감면금액을 환급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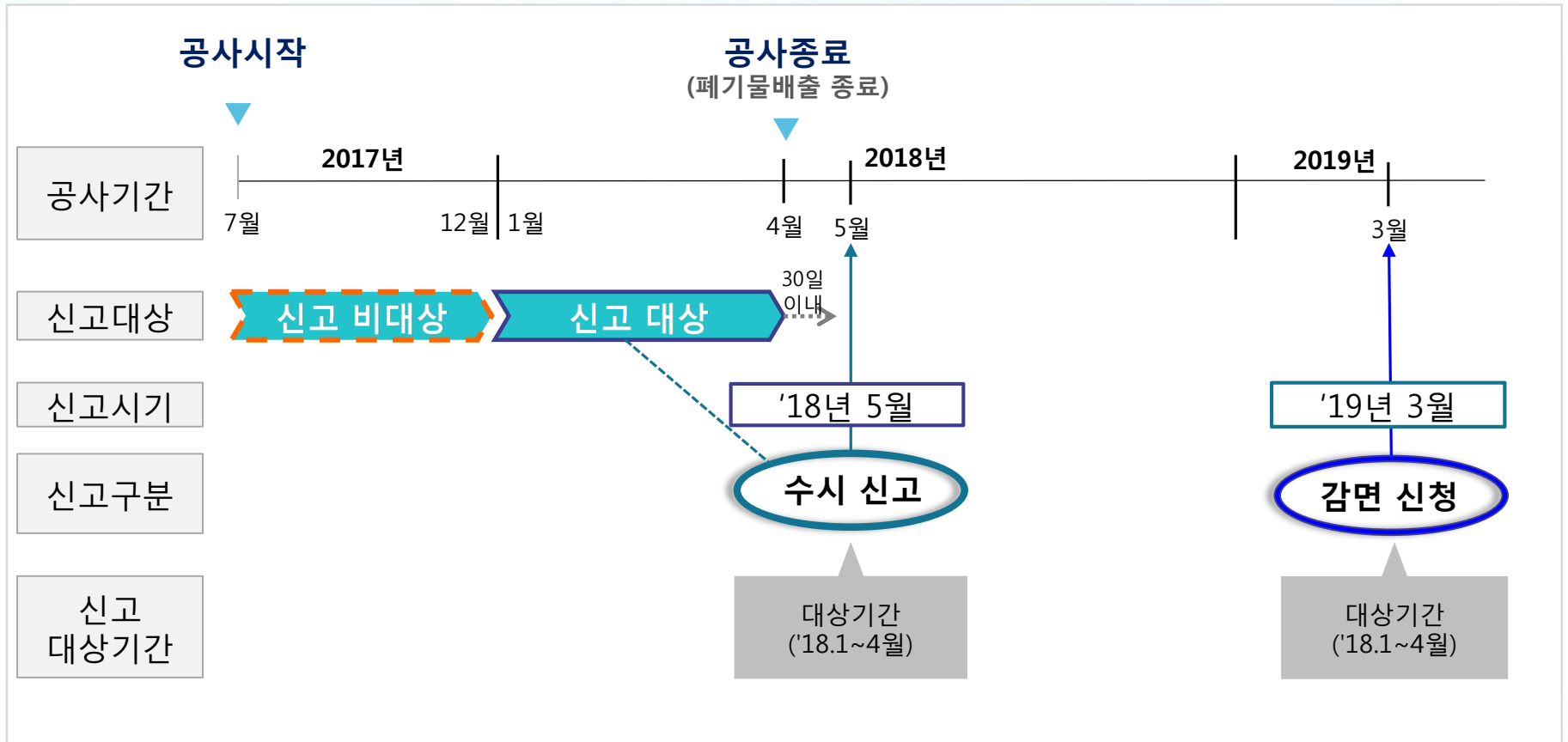
• 부과 예시



※ 수시신고 시 대상기간('19.1월~7월) 내 감면신청은 '20년 3월에 신청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 부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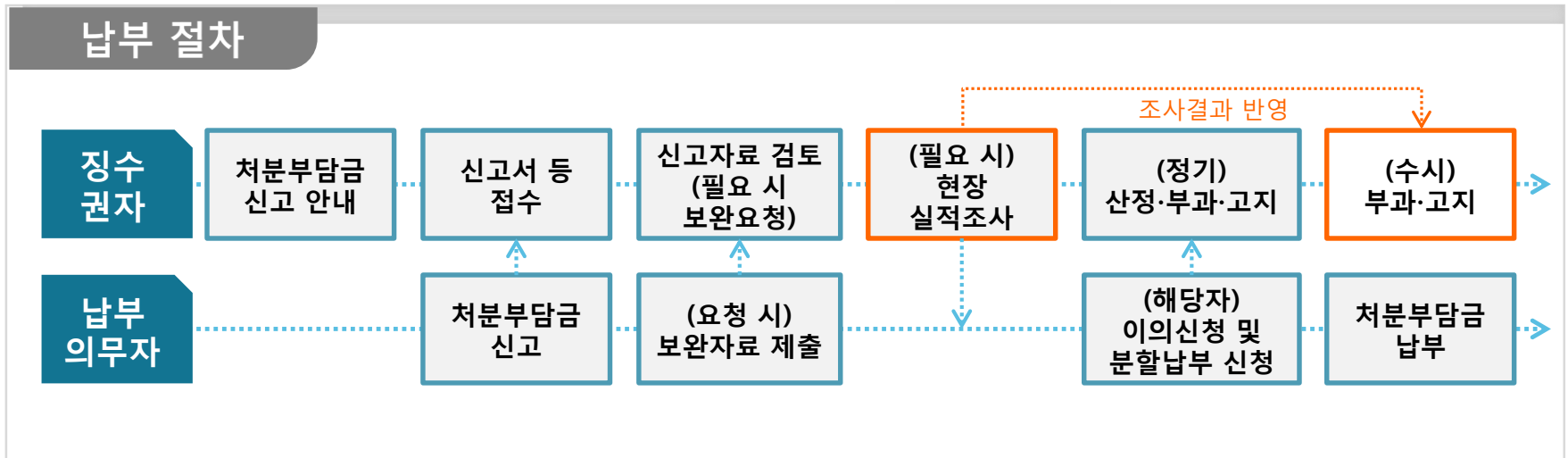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조사·확인 부과

- 폐기물 처분량 실적 조사·확인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납부 절차



● 조사대상

- 폐기물종류별 처분량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이의신청

- 납부고지 이후 또는 감면금액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대상	내용	법적 근거
정기 납부자	매년 4월 말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	시행령 제19조제3항
수시 납부자	12월 말일 이전 폐기물 배출 종료로 인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	시행령 제20조제2항
감면 대상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금액을 환급 받은자	시행령 제23조제1항

| 시행령 제24조(이의신청)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징수 유예

- 납부의무자가 아래의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처분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 시
- 징수를 유예(6개월)하거나 분할납부(3회 이하) 가능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징수유예의 연장
 - 위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시
 - 한 차례만 연장 가능(징수유예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단,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요구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뜰)

[] 징수유예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부터 20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 징수유예, [] 분할납부 또는 []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한국환경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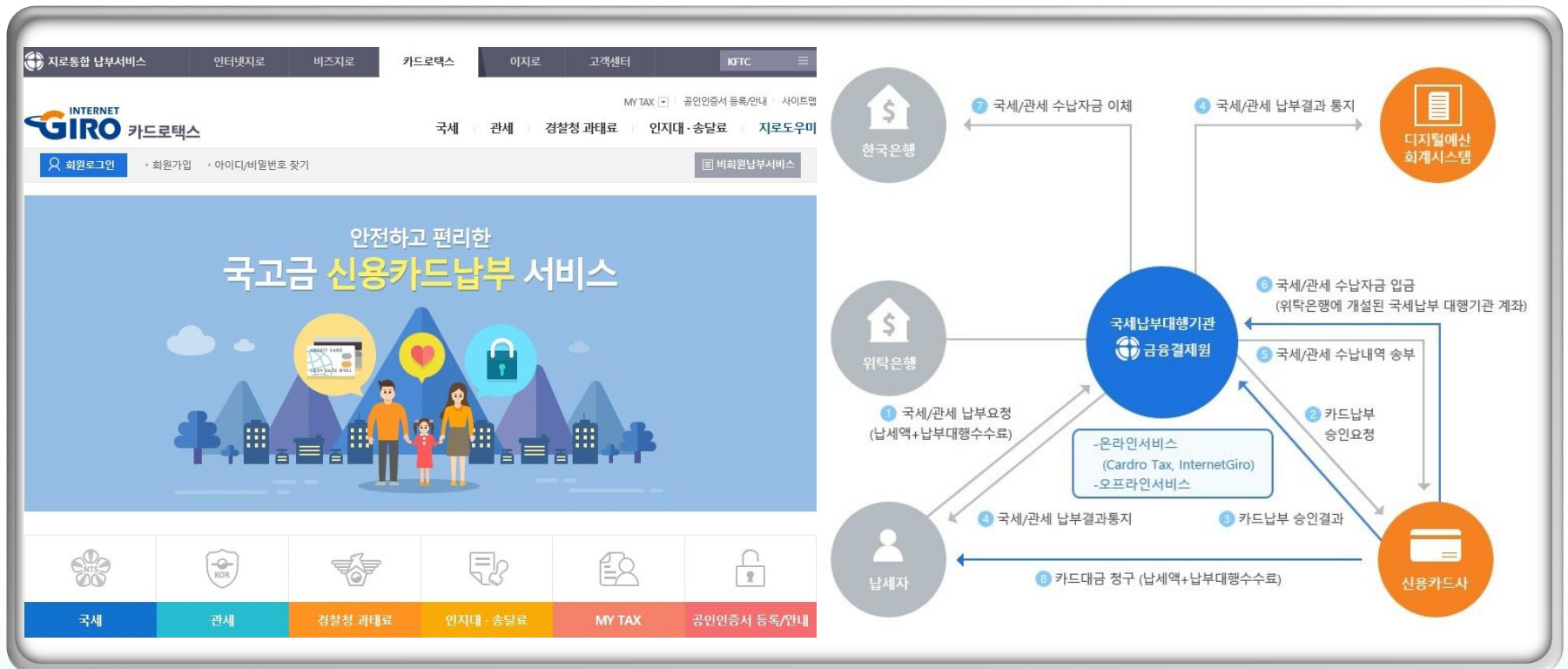
첨부서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신용카드 등 납부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지정
- * 수수료: 납부금액의 1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

환급

- **과오납된 금액**이 있거나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해당 납부자에게 지급

| 시행령 제23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가산금 부과 및 체납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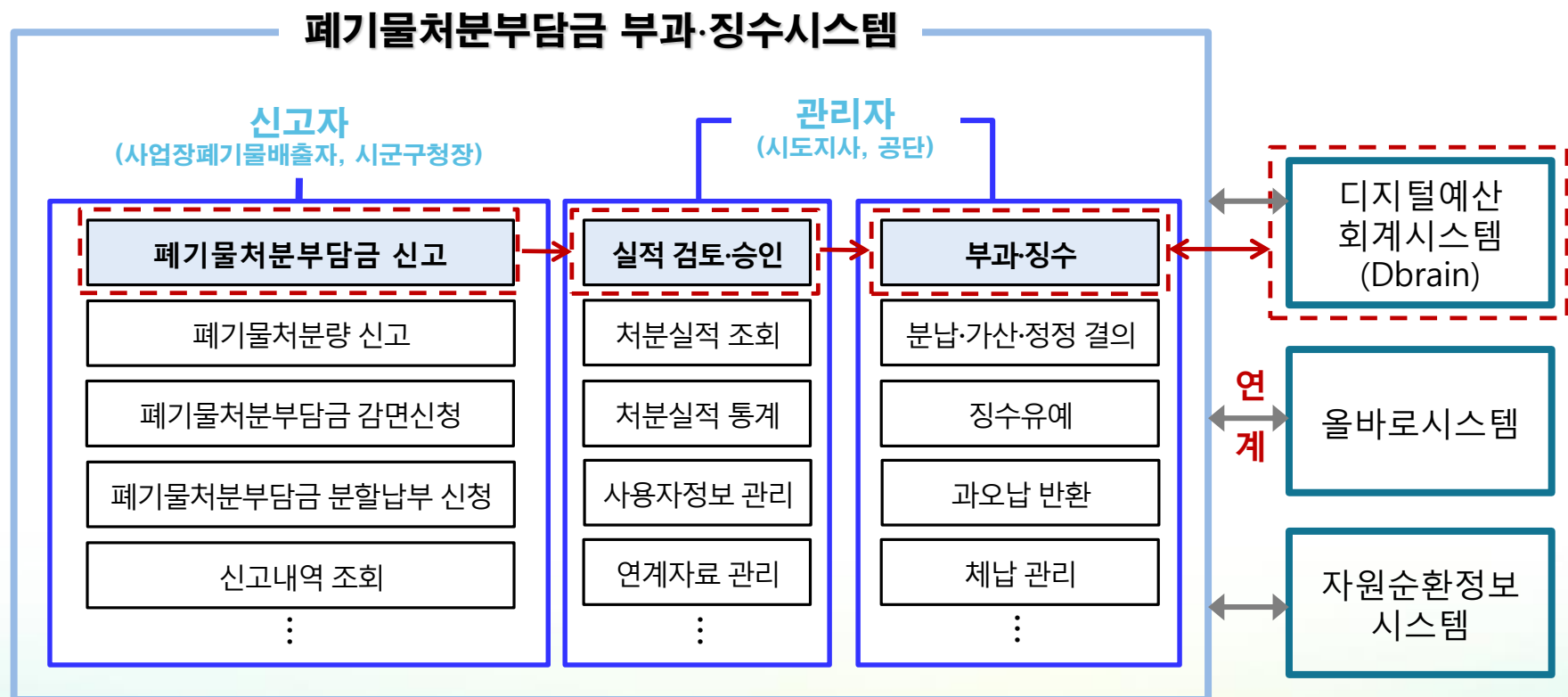
-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독촉을 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미납 시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법 제21조 제5항 및 제6항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절차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시스템(www.budamgum.or.kr)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감면신청, 분할납부 신청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 관련 시스템 및 외부행정망 연계를 통한 효율적 실적검증 및 부과·징수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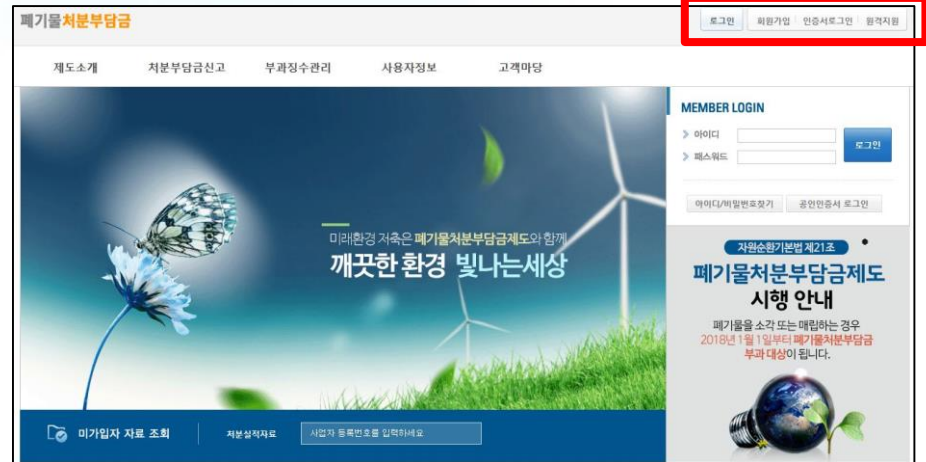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

회원가입



www.budamgum.or.kr 접속 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클릭

회원가입 클릭



본인 인증 후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 입력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

처분 부담금 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소개	폐기물처분부담금신고	부과징수관리	사용자정보	고객마당
제도소개	연계자료조회	고지납부관리	회원정보	교육자료
이행절차	1 폐기물처분부담금신고	유예신청내역	인증서	공지사항
법령마당	연도중배출종료신고	반환 및 이의신청내역	회원탈퇴	도움말
서식마당				자주하는질문
찾아오시는 길				자료실

① 폐기물처분부담금신고 또는 연도중배출종료 신고 클릭

② 신규작성 클릭 후 처분년도와 사업장 선택

01 정보조회
02 처분량 신고
03 예상부담금 안내

● 기본 정보

사업자명	테스...	204-26-75613
대표자명	김태...	841209-*****

● 연도중 배출 종료 신고내역

처분년도	2018	선택
사업장	선택	

※ 목록을 더블 클릭하여 처분량 신고

등록
닫기

<input type="checkbox"/> 선택	처분 년도	진행 상태	제출 유형	관할 지역	사업장 명	폐기물 처리량 (kg)	처분 금액 (원)	납부 금액 (원)	비대상 여부	제출 일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

처분 부담금 신고

○ 진행 상태

1 미제출 2 실적등록 3 제출 4 반려 5 승인 6 확정

○ 처분 정보

처분년도	2018	진행상태	미제출 ?
개인사업자 연간매출금액	2,000,000,000 원 (연간매출금액 등록자명 : 김형래) <input type="button" value="등록"/>		

* 법인사업자는 법인연간매출금액을 입력하시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연간매출금액을 입력하세요.

※ 추가/삭제/수정 후 저장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버튼을 눌러주셔야 정보가 입력되며, 요율/산정지수/처분금액(원)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 정보입력 시 클릭하시면 입력칸 또는 선택박스가 나옵니다.

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 유형	세부유형	처분 방법	처리 방법	처리 시설 명	처
4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

○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

선택

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 종류	상세	지정	의료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폐기물 정보 분류
 - [01]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02]부식성폐기물
 - [03]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 [04]폐유기용제
 - [05]폐페인트 및 페락카
 - [06]폐유
 - [07]폐석면
 - [08]폴리올로리네이트버페닐 함유 폐기물
 - [09]폐유축물질
 - [10]의료폐기물
 - [30]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40]건설폐기물
 - [51]사업장일반폐기물
 - [51-01]유기성오니류
 - [51-01-01]장수처리오니 (가연)
 - [51-01-02]하수처리오니 (가연)
 - [51-01-03]분노처리오니 (가연)
 - [51-01-04]가속분노처리오니 (가연)
 - [51-01-05]플프 · 제지공정오니 (가연)
 - [51-01-06]그 밖의 공정오니 (가연)
 - [51-01-07]플프 · 제지폐수처리오니 (가연)
 - [51-01-08]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가연)
 - [51-01-99]그 밖의 유기성오니 (가연)
 - [51-02]무기성오니류
 - [51-03]폐합성고분자합합물
 - [51-04]광채유

③ 추가를 클릭하면 폐기물 정보 입력란이 생성됨

④ 폐기물 종류를 클릭 후 신고대상 폐기물을 선택하여 더블클릭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

처분 부담금 신고

○ 처분 정보

처분년도	2018	진행상태	미제출 ?
개인사업자 연간매출금액	<input type="text"/> 원	<input type="button" value="등록"/>	

* 법인사업자는 법인연간매출금액을 입력하시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연간매출금액을 입력하세요.

※ 추가/삭제/수정 후 저장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버튼을 눌러주셔야 정보가 입력되며, 요율/산정지수/처분금액(원)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 정보입력 시 클럭하시면 입력칸 또는 선택박스가 나옵니다.

<input type="checkbox"/> 선택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 유형	세부유형	처분 방법	처리 방법	처리 시설 명	폐기물 처리량(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처분금액 (원)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설오니	40-03-10	건설폐기물		위탁	매립	OO매립장	500,000			
2	<input type="checkbox"/> 폐석고	51-12-01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위탁	매립	XX매립장	300,000			
3	<input type="checkbox"/> 정수처리오니	51-01-01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위탁	소각	OO소각장	400,000			

⑤ 폐기물 종류별 처분방법, 처리방법, 처리량 등을 입력

⑥ 저장을 클릭하면 요율, 산정지수, 처분금액이 자동계산 됨

처분 방법	처리 방법	처리 시설 명	폐기물 처리량(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처분금액 (원)
위탁	매립	OO매립장	500,000	30	1	15,000,000
위탁	매립	XX매립장	300,000	10	1	3,000,000
위탁	소각	OO소각장	400,000	10	1	4,000,000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스템

처분 부담금 신고

○ 첨부파일

폐기물 처분부담금 산출기초자료 (0)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0)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사본 등 (0)	위(수)탁 처리계획서 사본 (0)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사본 (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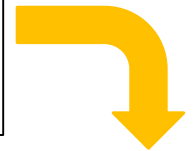
※ 첨부파일 등록 시 참고사항 ?

7 **+ 파일추가** × 파일삭제

파일명	파일 설명	파일 크기(KB)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14 목록

8 **실적등록**



⑦ **파일추가** 클릭하여 산출기초자료 등의 자료 추가

⑧ **실적등록** 클릭하여 산정내역 확인

⑨ **제출** 클릭하면 SMS인증 후 자료 제출 완료

○ 진행 상태

1 미제출 2 실적등록 3 제출 4 반려 5 승인 7 확정

○ 처분량 정보

처분년도	2018 년	진행상태	실적등록 ?
처분수량	1,200,000 kg	납부금액	22,000,000 원

건설폐기물 (매립) : 500,000 kg X 30 원 X 1 (산정지수) = 15,000,000 원
 사업장폐기물(가연성) (소각) : 400,000 kg X 10 원 X 1 (산정지수) = 4,000,000 원
 사업장폐기물(불연성) (매립) : 300,000 kg X 10 원 X 1 (산정지수) = 3,000,000 원

산정내역

납부 금액 : 22,000,000 원

납부 금액(강변 비대상) : 22,000,000 원

○ 폐기물 처분 산정기준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처분량) × 요금(원/kg) × 산정지수

폐기물 처분량	폐기물 매립·소각 처분량 기준, 중량(kg) 단위로 부과
부과요율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가연성/불연성),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분류별 자동 요금 적용
산정지수	전년도 산정지수 × 전년도 가격변동지수 최초 적용연도를 1로 정하고 그 다음연도부터 매년 증가율을 결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 부과요율

9 **제출**

SMS인증

SMS인증

인증번호

인증번호입력

전송

확인

※ 실제로 연락받을 업무담당자로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감사합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본사 폐기물처분부담금팀
(Tel. 032-590-5082~5091)**